



의안번호

제148호

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행정복지국장
제출연월일	2022. 10. 6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48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6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 추가
(안 제6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31. ~ 2022. 9. 20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사회복지과(041-635-4243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
가. 지원액 : 월 10만원(단, 지회장 변경 시 일수(日數)에 비례하여 계산)
나. 지급시기 : 매월 10일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복 지 정 책 과 장	김 배 자
	복 지 보 훈 팀 장	강 의 정
	담 당 자	심 우 연 (746-534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</u></p> <p><u>가. 지원액 : 월 10만원(단, 지회장 변경 시 일수(日數)에 비례하여 계산)</u></p> <p><u>나. 지급시기 : 매월 10일</u>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-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(9명)에 대한 회원관리비를 월 10만원씩 지원

나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안 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 제7호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19조에 의거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

나. 추계결과

- 2023년 세출 비용 : 10,800,000원

※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 9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산출

구 분	산출기초	금액(천원)
계		10,800
기타보상금	• 보훈단체 지회장 회원관리비 - 9명 × 100,000원 × 12월 = 10,800,000원	10,800

3. 작성자

복지정책과장 김 배 자

〈연도별 증가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10,800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시 비	10,800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세 출	10,800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	10,800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○ 보훈단체 지회장 회원관리비	10,800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재원 조달	10,800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 조 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	지 방 세	10,800	10,800	10,800	10,800	54,000
	세외수입					
	기금이자 수익금					
지 방 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을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